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 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 
2022. 12. 1(목) 10:00

# 제24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 
(복지가족국 소관)



**복 지 건 설 위 원 회**  
전문위원 추병수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258호
- 나. 제 출 자 : 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2. 11. 10.
- 라. 회부일자 : 2022. 11. 10.

## 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이 전부개정(2022. 1. 13. 시행)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 적합성을 높이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상위법 단순 인용 조문 정비(안 제8조제4항제5호)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7조제5항
-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의기관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
  - 1) 입법예고: 생략
  - 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첨
  - 3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별첨
  - 4) 규제심사: 원안동의(기획예산과)
  - 5)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(민원감사담당관)

## 5. 검토의견

### 가. 개정 이유

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지방자치법」의 전부개정에 따라 법령 인용 조항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임

### 나. 주요 내용

상위법 단순 인용 조문 정비(안 제8조제4항제5호)

### 다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상위법령 「지방자치법」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인용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 관계법령

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8661호, 2021. 12. 28., 타법개정]

**제7조(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 등의 명칭과 구역)**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, 그 결과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,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[이하 “행정면”(行政面)이라 한다]을 따로 둘 수 있다.

④ 동·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·리를 2개 이상의 동·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·리를 하나의 동·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(이하 “행정동”이라 한다)·리(이하 “행정리”라 한다)를 따로 둘 수 있다. <개정 2021. 4. 20.>

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21. 4. 20.>

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. <신설 2021. 4. 20.>